

환경법, 제정과 시행에 문제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홍보·계도 있어야—

환경관련법의 시행규칙(안)이 수록된 본 회보 1월호가 배포되자 연합회 사무실에는 법의 변경사항, 확정일자등을 묻는 문의전화들이 빗발쳤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 150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환경관련법이 그 시행일인 2월 2일이 되어서야 시행규칙이 확정케 된 것이다. 시행령의 경우도 법 시행 열흘전에 확정됐다.

지난해 가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시행령은 우후죽순처럼 입법예고 됐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된 것은 지난해 9월 25일 이었지만, 가장 늦게 입법예고된 환경정책기본법은 10월 20일자로, 전자에 대한 의견서마감일이 지난 5일후에야 이루어진 것이다.

게다가 시행규칙(안)은 구랍 27일, 한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는 분위기로 모두가 분주한 와중에 입법예고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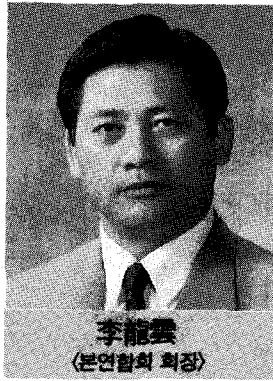
1월회보의 인쇄 직전에 갑자기 시행규칙(안) 인쇄를 위한 작업에 돌입, 연휴에도 교정을 보는 등 기쁨을 토했지만 결국 의견서 마감일인 1월 16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회원들과 관련단체에게 배포됐으니 사후 약방문격이 되고 말았다.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본 연합회에서는 환경관련 6개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되면 그 즉

시 환경처로 쫓아가 어렵게 자료를 얻어 인쇄하고 배포했었다.

이런 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결코 어떤 인사치레를 받기 위한 것이거나 생색을 내기 위함이 아니다.

기존법률의 한부분이 변경된



李龍彦
(본연합회 회장)

것도 아니고 환경보전법이 좀더 세분화 체계화되는 것이기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제정에 각계각층의 의견이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환경처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본 연합회에서라도 공청회를 개최해 환경에 관심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취합하려는 계획마저도 빈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결코 이번 법 제정에 국민의 의견수렴이 전혀도 외시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대적 부응에 따라 벌금이나 기준치는 강화됐지만 전반적으로 현실성이 감안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빈번한 법의 개정이다. 법 역시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이 법 따라 가기도 바쁠 정도로 갑작스럽게 바뀌는데 문제가 있다.

여기서 환경관련법의 지나온 연혁을 살펴 보자.

사실 지난 '77년에 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이래 이번 개정을 제외하더라도 4차례의 법률개정과 5차례에 걸친 시행령, 그리고 8차에 걸친 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적지 않은 법규의 제·개정 때에도 관보에 주요골자를 게재하는 것 외엔 의견 수렴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안다.

관보를 주의깊게 보는 이도 적을 뿐더러 단 몇줄의 주요골자만으로 어떻게 국민이나 환경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는가? 물론 환경처도 법제·개정시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나름대로 고충이 많은줄 안다. 하지만 환경관련법 시행일 당일에서야 시행규칙이 확정돼, 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가 아닌가 싶다.

이 시점에서 당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아울러 회원들은 새로 정비된 법을 잘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빠른시일내에 법을 숙지할 것을 하는 바이다. ◀